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86
----------	-------

발의연월일 : 2025. 11. 19.

발 의 자 : 이해식 · 박상혁 · 서영교
서영석 · 한병도 · 천준호
김교홍 · 위성곤 · 김성환
허영 · 한민수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10월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 보고서에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을 0(net zero)으로 하는 탄소중립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기준 세계 6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은 세계 7위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은 2021년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이에 지방재정에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4조제7호의

2·제36조의3·제44조의2제1항제7호의2·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위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온실가스감축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6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 목표 및 감축효과분석
- ④ 그 밖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제60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36조의3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 예산서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u>「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u> <u>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u> <u>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u> <u>“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u> <u>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u> <u>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u> <u>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u> <u>다.</u>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 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 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8. (생 략) <u><신 설></u>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 발 등) ----- -----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u>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u> <u>결산 등 지방재정의 온실가</u> <u>스감축인지적 운용 및 분석</u> <u>방안</u> 8. (현행과 같음) 제36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예

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감축효과분석

④ 그 밖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

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 7. (생략) <u><신설></u> 8. ~ 14. (생략) ② · ③ (생략)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 9. (생략) <u><신설></u> 10. ~ 16. (생략) ② ~ ⑧ (생략)	-----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u> 8. ~ 1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 ----- ----- ----- -----. 1. ~ 9. (현행과 같음) <u>9의2. 제36조의3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u> 10. ~ 16.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	---